

드론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3.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드론교육센터(이하 “센터”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센터는 전주대학교 LINC3.0사업단 산하에 두며, 비행실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시설을 본교 운동장 및 별도의 지정 장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센터장은 드론 전문지식을 갖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LINC3.0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행정인력) 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팀장, 지도조종자(교관),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드론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LINC3.0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교육운영

제8조(교육과정) ①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1~4종) 과정,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실기평가조종자 과정, 드론 아카데미 과정, 드론동아리 등 그 밖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개설한다.

제9조(교육기간) 교육 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교육생 모집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10조(교육지원 자격) 교육생 지원 자격은 과정별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한 자격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 및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선발방법)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상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드론 관련 정규학점인정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시 지도조종자(교관)가 교육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비) 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비의 면제,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수료기준은 각 과정별로 상이하며, 총 이수 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한 자로 한다. 다만,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육생 활동의 금지) 교육생은 교육기간 동안 안전 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집단행동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은 교육비, 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